

제 736 호
1979.10.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경상천
편집 : 문화정보원 김재식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규칙

제 1825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3
------------------------------	---

◎ 교시

제 441 호 : 도시계획 사업 (시장) 시행허가	36
제 442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허가	36
제 44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7
제 44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7
제 445 호 : 사하단체동록취소	38

◎ 공고

제 343 호 : 동정사위치 변경공고	39
----------------------	----

1. 시 풍부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 번 제 39>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76

제 345 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제공고	39
제 347 호 :	환자체회일부변경인가및환자예정지변경자정공고	44
제 34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44
제 349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45
제 350 호 :	환자체회일부변경인가및환자예정지변경자정공고	46
제 353 호 :	본주주여단자분양(환자)처분공고	46

보 1979.10.17 45-3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0월 19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25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3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다. 공무원교육원, 지하철본부, 세
종문화회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 주무
과 주무과장

제 11 조 제 2 항 중 '타자로 작성한
다'를 '타자로 작성함을 원칙으
로 한다'로 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전보 또는 전직 금지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교란에 '지방공
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 조 제 4 항 및 영
제 2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
년간 금지된 자

2. 영 제 2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전보가 금지된자
제 1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한다.

1.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인사과(지하철본부 소속기능직
은 지하철본부 관리과)

2. 고등원 및 삽급직원
본청 : 총무과
구출장소 및 사업소 : 인사담당부서

제 17 조 제 1 항 중 '(구출장소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 22 조 중 '특별승진', '승진'
및 '별지 제 6 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응시결석사유) 법 조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6-4 제736호 시

보

1979.10.19

제24조 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급수 및 등급	시험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3 급		20세 ~ 45세	
4 급		20세 ~ 40세	20세 ~ 45세
5 급		18세 ~ 35세	18세 ~ 40세
기능직 7등급 이상		18세 ~ 40세	20세 ~ 45세
기능직 8등급 이하		18세 ~ 35세	18세 ~ 40세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 및 6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서울특별시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별표7」을 「별표6」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중 「특별임용」을 「특별임용시험」으로 하고,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급 및 3급갑류는 6년이상 다만 3급갑류 의무직은 3년이상
 2. 3급을류는 3년이상, 다만 4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고 선박직렬에 있어서는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의사를 의무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요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4급갑류는 2년이상 다만,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제736호 시

보 1972.10.19 45-5

4.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4급율류로 할 수 있다. (2)영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서험에 있어서 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 발기준과 주전질차 및 임용자격 급은 다음 수호와 같다.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한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 한자는 6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⑤영제 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계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 발기준과 주전질차 및 임용자격 급은 다음 수호와 같다.
1.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자는 시 범고구일선 별표 7과 규정과 학 과를 출신을 자료로 신청 시,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주관된 자격여부를 한다.
2.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7에 규정 된 당해 산업계학교 졸업과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 학교별	임용 예정 직급
대학 4년(대학원) 졸업자	4급합류 또는 4급율류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
전문대학 졸업자	4급율류 또는 5급합류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
산업고등학교 졸업자	5급율류 또는 기능직 7등급이하
⑥영제 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자의 특별임용 예 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46-6 제736호 시

보 1979.10.19

출신 학교 별	임용 예정 직급
대학교 4년 졸업자	4급감류 또는 4급율류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
전문대학 졸업자	4급율류 또는 5급감류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
고등학교 졸업자	5급율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

⑧영제 1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진산, 지역사회 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6조(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제 17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구청장 이상의 표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새식시에 받은 표장이나 은사장은 제외)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자

4. 향토예비군 지역충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 2조 제 2항 제 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 제 2항 제 7호 규정에 의한 고봉원으로 2년이상 근무자

7. 국가공무원법 제 85조 제 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41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임금직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자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보직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 직을 변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자 5입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7 조 표증 5급 유통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율류	기능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자
	기능적 10등급 공무원으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자
제 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삭제하고 제 4호 다음에 제 5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5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 영제 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 중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 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 54조중 제 1항 및 제 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 3항중 "1년"을	제 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6조(전보 사전의결) 영제 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 위원회에 전보 사전의결 신청을 할

<p>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 한다.</p> <p>제57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장 제2절에 둔다.</p> <p>제57조(공무원 교육원 교관임용)</p> <p>(1)공무원 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별표 17)의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관은 1인 1분야에 한하여, 모든 교관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나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부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p> <p>(2)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13조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p> <p>(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p> <p>1. 징계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계류중인 자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자</p> <p>2. 심신장애로 교수에 지장이 있는 자</p> <p>(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p>	<p>1. 교관 재직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p> <p>2. 심신장애로 교수에 지장이 있는 자</p> <p>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p> <p>제5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4급 율류 이하 공무원으로 특수 공로자</p> <p>제59조 제1항중 "다면 동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을 "다면 승진 시험 시행일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으로 한다.</p> <p>제69조(고용원의 정년) ①고용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수위·제도 및 원예직: 60세</p> <p>2. 타자·전화교환원·안내원: 40세</p> <p>3. 경비: 50세</p> <p>4. 간호원: 55세</p> <p>5. 사환: 20세</p> <p>6. 전각호 이외의 직: 58세</p> <p>②고용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속하는 경우는 6월 30일에서 7월과 12월 사이에 속하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p> <p>③본조의 규정은 잡급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연예시 전</p>
--	---

문 분야위원 등에 대하여는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9 조의 3 중 제 2 항을 삭제하고 제 3 항을 제 2 항으로 한다.
제 74 조를 삭제한다.

제 80 조 '과정정표 제출결차표' 중 '농촌지도소'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구분란 '농무원교육원·지하철본부'를 '농무원 교육원·지하철본부·세종문화회관·종합운동장'으로 한다.

구 분	과 평 정 자
농촌지도소	3 급
	4 급 이 하

제 80 조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 9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0 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농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농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 기관 (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료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 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전기평정일로 부터 5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 (전자체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반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농무원 및 기능직농무원이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농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제 출 결 차
지도소 → 농촌진흥청
지도소 → 인사과
8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만점의 5 할을 당해 농무원의 훈련 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종무서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영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보 농무원이 실사가 받은 교육훈련의 차를 준용한다.
제 9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0 조의 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 90 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단파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종무서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농공 및 민간 연구 기관의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 90 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농무원의 제 1 호 이외에 종무서장관이 인정하는 2 월이상의 국외의 농공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46-10 제736호 시

보 79.10.19

<p>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과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p> <p>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한한다.</p> <p>나. 가족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p> <p>제 94조 제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타자, 주산자격증 또는 대사, 주산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급의 4급이하 공무원이 재직 중 당해 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하위급류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p> <p>제 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95조(근무경력의 가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새마을문야 본청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과, 구: 새마을과)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매 1월마다 0.07점 가점으로 평정하되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제 1항의 가산점은 3점을 초과 	<p>하여 평정할 수 없다.</p> <p>③ 제 90조 및 제 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훈련성적 평정점에 가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일이상 90일이하 - 1.0점 2. 90일초과 180일이하 - 1.5점 3. 180일초과 - 2.0점 <p>제 98조 단서중 "그날로"를 "그 다음날로" 한다.</p> <p>제 100조 제 1항중 제 1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 7호를 삭제하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 전입(4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 93조 내지 제 9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p>(2)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전출되거나 영제 34조 또는 영제 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및 영제 3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p> <p>제 101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10일
---	---

개 736 호 시

보 79.10.19 46-11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3 조 제 2 항 중 "출장소 직원의 신상상담소는 출장소 서무과에 두고"와 제 5 항을 삭제한다.

제 104 조 중 "와 출장소 직원" 및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 106 조 제 107 조 및 제 109 조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별표 2) 자동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 시험 및 전식시험에 필요한 학력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의 2)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특전이 부여되는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5)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를 삭제한다.

(별지 6) 특별임용 급류 상당 경력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

과 대비표 중 화공직렬 해당학과란

의 "화공(공업화학, 분석화학)"

다음에 "화학·물리"를 신설 삽입한다.

조선식령 해당학과란 "조선" 다음에

"조선공학"을 신설 삽입한다.

공업연구직렬 해당학과란의 "조선"

다음에 "산업공학"을 신설삽입한다.

농림직원한의 "농림(해당분야)"

을 "농림"으로 한다.

농공연구직렬의 해당학과란의 "농

공" 다음에 "농공학·환경학·수산

학·간사학·농생물학·농가생각"을

신설 삽입한다. 항공직 관련의

직군·직령·해당학과 및 비고란을

삭제한다. 보건직군의 보건관련직

령 해당학과란의 "보건"

다음에 "의학·치의학"을

신설 삽입한다.

(별표 11) 법정직종두원 경력

의 해당급유도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교과문야술 필자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중 제 5 단 및

제 6 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별	구 분	폐정정자	정 정 자	확 인 자
5. 공무원교육원, 세종문화회관 종합 운동장, 지하철본부	4 을 이하	과 장	기 관 장	
6.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	소 장	

4. 12. 세 736 호 시

보 79.10.19

(일표 18) 중 제 3란 및 제 4란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일표 18 의 2) 중 제 5란 및 제 6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 3란을 삭제한다.

기 판 별	구 분	피정성자	평정자	확인자
		4. 갑	파 장	기 판 장
5. 구부원교육원, 세종문화회관, 종합 운동장, 자하절본부	3. 을			
5. 농촌지도소	4. 갑	기술담당판	소 장	농촌진흥청장
	3. 을	소 장		

(떨지 제 6조 서식) 을 삭제한다.
 (1지 제 8호 서식) 및 (떨지 제 9호 서식) 을 삭제와 같이한다.
 (떨지 제 36 호의 2 서식) 中 “인사기록카드요약서”를 “인사기록요약서”로 “하고, “3급특승응시상황”란을 삭제한다.

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요구증에 있는 것은 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다만, 특별승진, 특별 유통,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46-13

(별표 2)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공개경쟁 특별임용	전	비고
		신규임용 시 험	승진시험시 험	식 시 험	
1	시험요구서 1부			0	0 별지 9호서식
2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1통			0	
3	인사기록요약서 1통			0	별지 37호서식
4	정·현원표 1통			0	
5	특별임용사유서 1통			0	
6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 는 직무기술서 1통			0	
7	경력증명서 1통			0	해당자에 한함
8	재직증명서 1통		0		
9	최종 학력증명서 1통			0	전직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초본 1통	0		0	
11	신원증명서 1통			0	시·구·읍·면장 발행
12	병역증명서 1통	0		0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남자에 한함
13	채용신체검사서 1통	0		0	국립·종합병원 장 발행
14	복무확인서 1통	0		0	현역 군인에 한함
1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0	해당자에 한함
16	원호대상자 증명서 1통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0		0	해당자에 한함

46-14 제 236 호 시

보 1979. 10. 19

구분	구비 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공개경쟁	특별임용	전식	비고
		신규임용 시 험	송진시험 시 험	시 험		
	제 2 조 제 2 호내지 제 4 호해당자와 국가유공 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의 호법의 적용대상 자인 경우에 한함)					
17	주산자격증 또는 능력 검정합격증 1통 (문교부 장관과 기타주산 능력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 권을 갖는 주무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	0	-	0		해당자에 한함
18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검정합격증 1통 문교부장관, 노동청장관 기타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하급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 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에 한함) 그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 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발령)	0	-	0		해당자에 한함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응시자는 본표에 규정된 해당서류는 제3차
시험 응시자에 제거한다.

제 736 호 시

보 1979. 10. 10. 45-15

(별표 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필요한 학력기준표

식별	구분	4 급 이 상	5 급
공업 연구	기계 분야	기계공학을 이수한자	공업 고등학교
	전기 분야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이상 출입자 물리학을 이수한자	
	설유 분야	설유공학을 이수한자	
	화공 분야	화학공학, 응용공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야금 분야	금속공학 또는 야금학을 이수한자	
	공업경영 분야	공업경영학을 이수한자	
	환경 분야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공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철문기상학, 성물학, 토목공학 또는 도시계획을 이수한자	
농촌 지도	농업지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농업제통의 고등학교이상 출입자	
	농업 분야	농업제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농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농업제통의 고등학교이상
	농업경영 분야	농업경영학 또는 농업경제학을 이수한자	출입자
	임업 분야	임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잠업 분야	잠사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축산 분야	축산학 또는 동물학을 이수한자	
	가축위생 분야	축산학, 동물학 또는 수의학을 이수한자	
광업 연구	농공 분야	농업공학, 전축공학, 기계공학, 새로공학 또는 토목공학을 이수한자	
	기계 분야	기계공학, 새로공학, 금속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고등학교이상 출입자

46-16 제736호

시

보 1979.10.19

식 력		구 分	4 급 이 상	5 급
		전기분야 이수한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화공분야 채광분야 지질분야 야금분야 선풍분야 물리분야 토목분야	화학공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채광학 또는 지질학을 이수한자 지질학을 이수하자 야금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지질학. 야금학 또는 채광학을 이수한자 물리학을 이수하자 토목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보건연구		의학분야 공중보건 분야 약학분야	의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 품학.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또는 위생공학을 이수하자 약학. 생물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수 산		수산부야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수산 또는 해 양 계통의 고 등학교 이상 졸업자
토 목		도시계획 분야	토목. 건축. 도시공학(도시계획포함) 또는 자리학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이수자	토목. 건축. 지 적 또는 지리와 관련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 고

1. 웨표중 3급이상의 응시 학력은 4년대학 및 교육법에 의한 4년대학
제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제3학년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제3
학년의 제1학기까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3학년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2. 웨표중 4급의 응시 학력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
교졸업자 및 동 졸업예정자(최종학년의 제1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고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하다) 4년제 대학 제2학년 수료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3. 위의 1 및 2의 학력은 소속기관의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전직사임의 등급 예정도한자 평가표

직렬	구분		3급 이 상		4급		5급 이 하		
	사	서	정	사	서	정	사	서	
수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의	의	무	의	의	의	의	의	의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원·법·의·무·분야)	
의무(치의분야)	치	파	의	사	치	파	의	사	
약무	약		사	약		사	약		
간호	간	호	원	간	호	원	간	호	
선	박		갑	종	선	박	종	선	
(선박분야중 할 해)	선	박	갑종	선장, 어선갑종, 율종선장, 어선율종, 윤관 2등항해사, 선 장, 갑종 1등 및 선장, 율종 1등항해사, 선종 2등항해사, 2등항 해사, 어선갑사, 어선율종 1등항해사, 명우항해사, 소원 1 등 1등 및 2등항해사 해사	갑종선장, 어선갑종, 유품 2등항해사, 선 종 1등 및 2등항해사 해사	갑종기관장, 갑종 1 등 및 2등기관장, 유품 1 등기관장, 유품선박 통신사	갑종기관장, 유품 1 등 및 2등기관장, 유품 1 등기관장, 유품선박 통신사	갑종기관장, 유품 1 등 및 2등기관장, 유품 1 등기관장, 유품선박 통신사	갑종기관장, 유품 1 등 및 2등기관장, 유품 1 등기관장, 유품선박 통신사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적축량사)	2급	(지적기사 적축량사)	기적기사 1급, 지적 기동사 1급 및 2급 (지적기동사)	기동기사 1급, 지적 기동사 1급 및 2급 (지적기동사)	기동기사 1급, 지적 기동사 1급 및 2급 (지적기동사)	기동기사 1급, 지적 기동사 1급 및 2급 (지적기동사)	

비고 : 윗 표중 () 속에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정한 자격증에 의한 자격증의 명칭임.

46-18 제 736 호 시

1979.10.19

(별표 4의 2) 특별입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특전이 부여 되는 자격증 구분표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기계분야	기계기종사(전설기계)(전설기술), 설기술자, 용류(기자)감류(기계))	전설기계사 1급(전설기술자), 설기술자 1급(기자)	전설기계사 2급(전설기술자, 병류(기자))
차량분야	일반기능사 1급 일반기계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1급	일반기능사 2급 일반기계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급	일반기능사 2급 일반기계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급
자동차	자동차정비기사 2급 (1급 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2급 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정비기사 2급 (1급 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점검기사 1급 자동차감지기사 2급
중기분야	제빵기사 1급 (1급제빵사)	제빵기사 1급 (1급제빵사)	중기조정사 면허 제빵기능사 2급 (3급제빵사)
기계분야	전기기사 1급(전기기증기사 2급(전기기증기술자 1급) 주임 기술자 2급)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기술자 1급) 전기기능사 1급 (전기기술자 1급)	전기기사 2급(전기기증기사 2급(전기기증기술자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기술자 1급) 전기기능사 1급 (전기기술자 1급)	전기기사 2급(전기기증기사 2급(전기기증기술자 3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술자 1급) 전기기능사 1급 (전기기술자 1급)
기기력 분야	방사선위급증기사 방사성 방사성능의 원소와 원자(특수원자)	방사선위급감독자 방사성 방사성능의 원소와 원자(특수원자)	방사선위급감독자 방사성 방사성능의 원소와 원자(특수원자)

46-20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직별	구분	3 급 이상	4 급	5 급
	섬유분야	섬유기술자 (기술 사 섬유부문)	품질관리 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사 1급 (품질관리사)
	화공분야	화공기술 또는 산업 용용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 분))	화학관리 기사 1급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1급 화약물관리 기사 1급 위험물 취급기동사 화공기사 1급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2급 화약물관리 기사 2급 위험물 취급기동사 화공기사 2급
	조선분야	조선기술자 (조선 설계 . 선체 . 기관 검사)	조선기사 1급 박용기계기사 1급 조선제도기동사 1급	조선기사 2급 조선제도기동사 2급
	금속분야	금속기술자 (기술 사 (금속부문))	금속관리기사 1급 금속기사 1급	금속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금속기사 2급
제 작 장		광업기술자 (채광)	광산보안기사 1급 광산기사 1급	광산기사 2급 광산보안기동사 2급 광산기계설치기동사 2급
농 림	농업분야	산업용용기술자 (농예화학 . 식품 제조가공) (기술사 (농업부 문 : 작물식물방역)) (기술사 (농업부 문 : 농화학))	농예화학기사 1급 원예증묘기사 1급	농예화학기사 2급 원예증묘기사 2급 농약기동사 2급
	첨업분야	첨유기술자 { 생사 (기 술사 : 농업부문 많사) } { 생사 : 농업부문 많사) }	첨유기술자 { 생사 { 기 술사 : 농업부문 많사) } { 생사 : 농업부문 많사) }	
	위업분야	산업용용기술자 (임산 기동) (임업부문 (임 산))	임산기동기사 1급	임산기동기사 2급

직렬	구분	3급 이상	4급	5급
		산업용기기술자(종묘)	임업증보기사 1급	임업증보기사 2급 임산가공기술자 2급 임업증보기술자 2급
축 산	축산분야	기술자 (농업부문 : 축산)	기술자 (농업부문 : 축산)	기술인·농구수사
농 촌 지 도	농업분야	산업용기기술자 (농 예화학)	산업용기기술자 (농 예화학)	
농 연 업 구	농업분야	기술자 (농업부문 : 농화학) 기술자 (농업부문 : 식품제조가공) 기술자 (농업부문 : 식품가공) 기술자 (농업부문 : 작물) 기술자 (농업부문 : 식물방역)	기술자 (농업부문 : 농화학) (기술자 (농업부문 : 식품가공) 기술자 (농업부문 : 작물) 기술자 (농업부문 : 식물방역)	
농 연 업 구	잠업분야	생유기술자 (생사(기 출자 : 농업부문 : 잠 사))	생유기술자 (생사(기 출자 : 충점부문 : 잠 사))	
농촌지도				
농 업 인 구	축산분야	기술자 (농업부문 : 축산)	기술자 (농업부문 : 축산)	기술인·농구수사
농촌지도				
농 업 연 구	가축위생 분야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보 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수의사, 약사 의사, 물리치료사, 치

46-22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직렬	구분	3 급 이상	4 급	5 급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또는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또는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또는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또는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보 전 연 구	공해분야 의학분야	공해관리 기술사 공해관리 기사 1급	공해관리 기사 2급	공해관리 기사 2급
	의학,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공중보건 분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간호원, 공해 관리 기술사, 식품제 조가공기술사, 공해 관리 기사 1급, 식품 제조가공기사 1급,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등위원소취급 자(특수또는일반)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사, 위생시 험사, 간호원, 공해 관리 기사 2급, 식품 제조가공기사 2급,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등위원소취급 자(특수또는일반)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파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간호 원, 간호보조원, 공 해관리 기사 2급, 식 품제조가공기사 2급 방사선취급감독자 및 방사선등위원소취급 자(특수또는일반) 를 추가한다.
	약학박사	약사	약사	약사
수 산	산업용용기술사 (수산제조)	수산재조기사 1급	수산제조기사 2급	
토 목 분 야	일반토목토목기술사(시공) (건설기술자감류 (토목))	토목기사 1급 (건설기술자율류 (토목))	토목기사 2급 (건설기술자명류 (토목))	

제 736 호 사 보 1979.10.19 16-23

구분	3 급 이상	4 급	5 급
직업	주치기사 1급 (1급 측량기사)	주치기사 2급 (2급 측량사)	주치기사 2급 (2급 측량사)
		토목재토기능사 1급	토목재토기능사 2급
		측량기능사 1급	측량기능사 2급
도시계획 분야	국토개발기술사 (지역 또는 도시계획) 토지영가사	도시계획기사 1급 기적기사 1급	도시계획기사 2급 기적기사 2급
수도입부 분야		재량기사 1급 부량기사 2급 (2급 재량사)	재량기능사 2급 (3급 재량사)
전 축	건축사 (1급건축사) 건축기술사 (전축시 공) (건설기술사장 류 (전축)) (건설 기술자율류 (전축)) (1급축량사)	건축사 (2급건축사) 건축기능기사 1급 (전설기술자율 류 (전축)) (전축 기술사 1급)	건축사 (2급건축 사) 건축기능기사 2급 (전축기술자 류 (전축)) 전축 재량기능사 2급
축 지	축지기사 1급 (1급축량사)	축지기사 2급 (2급축량사)	축지기사 2급 (2급축량사)
통신사 분야	유선통신 (제 1급무선통신사)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유선통신설비기능장 1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유선통신설비기능사
무선통신 분야	전파통신기사 1급 (제 2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2급 (제 3급무선통신사) 무선통신설비기능장 1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제 3급무선통신사) 무선통신설비기능장 1급
통신기술 분야	통신기계 또는 2급 (1급 또는 통신설비 2급 유선통 신기술)	유선설비기사 1급 (2급유선통신사)	유선설비기능사 2급 (3급유선통신사)
통신기술 분야	통신설비 2급 유선통 신기술)	유선설비기능사 1급	

46-24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직업	구분	3급 이상	4급	5급
전송기술 분야	방송기술 분야	무선설비기사 1급 또 는 2급 (제 1급 무선 기술사 또는 제 2급 무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2급 (제 2급 무선기술사)	무선설비기능사 2급 (제 3급 무선기술사) 제 1, 2, 3급 아마추 어 무선기사 특수급 무선기사

비고 : 웨표() 속의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이전의 다른 법
령에 의한 자격증 명칭임.

(별표 6) 특별임용급류상당경력기준

직무분야	임용예정	4급급류		4급급류		5급급류		5급급류	
		2급급류	2급급류	3급급류	3급급류	기능직6	기능직7	기능직8	기능직9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점경	경감	경사	경장	경순경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방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령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장	지방소방교장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정	소방소장	소방령	지소방위	소방장	소방교장	소방교장	
군인	준장 대령 중령 대위	중위	중위	소령	소위	상사	상사	상사	
교육대학 학교 수업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공무원 (초급대학 (3년이하)									
(사업 전문학교포함)									
교원 (초, 중, 고등학교및기타교육공무원)	9호봉	16호봉	20호봉	24호봉	29호봉	30호봉			
	이사(상이상)	봉이상	이사(상이상)	이사(상이상)	이사(상이상)	이사(상이상)			
	(6호봉)	(9호봉)	(11호봉)	(11호봉)	(15호봉)	(15호봉)			
	이상)	이상)	봉이상)	봉이상)	봉이상)	봉이상)			
판사·검사	4호봉 이하	6호봉 이하	9호봉 이하						

46-26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임용예정 직무분야	급류 2급급류 2급율류 3급급류 3급율류 기능직 6 기능직 7 기능직 8 기능직 9 등급이상	4급급류 4급율류 5급급류 5급율류 기능직 6 기능직 7 기능직 8 기능직 9 등급등급 하 9 등급
기능직 · 고용원		기능직 6 기능직 7 기능직 8 기능직 9 등급이상 7 등급 8 등급 9 등급 고용원
정부부자기관 이사·부사장·파장	제장	평사원
(차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관련직무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문야박사 박사학위 박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소지자 소지자 (13년) (8년) (5년이 이상)		

- 비고 : 1. 윗표에 기재된 당해 급류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영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교육공무원중 팔호안에 표시된 호봉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요경력년
수에 달한 때에는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4 : - 1.

(별표 11) 별정직 공무원 정리의 어 담급 유보

구분	해당급류 4급감류기능직 4급율류기능직 6등급이상 7등급		5급감류기능직 5급율류기능직 8등급 9등급이하	
	4급 및 5급	4급감류상당 4급율류상당	5급감류상당	5급율류상당
경찰공무원	경감·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군인	중위	소위·준위	상사·중사	하사
군속	4급감류	4급율류	5급감류	5급율류
교육공무원	대학전임강사· 13호봉 이상 의장학사 중학교교감·13 호봉이상의 중 등학교교사·국 민학교교장	대학조교· 14호봉 이하의 장학사, 14호봉 이하 22호봉이 상의 중등학교 교사·국민학교 교감·13호봉이 상의 국민학교교사	23호봉이하의 중등학교 교사 14호봉이하 22·23호봉이하의 호봉이상의 국민·국민학교교사 학교교사.	

(별표 17) 교과분야

1. 기획 및 일반재정분야
2. 세무행정분야
3. 행정법규 및 송무분야
4. 지역개발분야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정비, 재개발 등)
5. 행정관리분야 (민원업무, 행정동률, 문서, 통계 등)
6. 경신개발분야
7. 토목기술분야
8. 건축기술분야
9. 농림수산분야
10. 상공행정분야
11. 보건행정분야
12. 민방위분야

(별지 제 8 호 서식)

응 시 원 서 (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규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하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정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9 년 월 일

② 본 적												(통 반)	
③ 주 소												졸업·졸업예정 수료·재학	
④ 최종출신학교		19 년 월 일			학교(과년)			졸업			종 사		
		19 년 월 일			학교(과년)			졸업					
⑤ 경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일부터 일까지									
⑥ 선택 과목	1	2	3	⑦ 가산 기표란	기능 시행 기관	주산	급	타차	급	⑧ 원호() 대상자	⑨ 제대(현역)군 인복무기간 ~	⑩ 비고	
⑩ 응시 급류	글 음류			⑪ 성 (한글)						⑫ 성별 남	⑭ 사전 반명함판		
⑫ 응시 직렬	(직 분야)			명 (한자)						여			
응시 ※ 번호	부호			⑯ 생년 월일	19 년 월 일			생(세)		(3.5cmX4.5cm)			
				⑰ 주민등 록번호									

219)

제 인		용 시 원 서(부본)				※ ⑨ 우무인 출전시에는 찍지 말것.	제 736 호
⑩ 용시 군유	금 윤유	⑪ 제 회		시험			
⑫ 용시 직별	(분야)	⑬ 성 명	(한글)	⑭ 성 별	남	사진	반명한판
용시 번호	부호	⑮ 생년 월일	19 년 월 일생(세)	⑯ 성별	여	(3.5cm×4.5cm)	
⑰ 주민등록번호							
제 인		용 시 표				⑲	1973.10.19
⑳ 용시 군유	금 윤유	㉑ 제 회		시험			
㉒ 용시 직별	(분야)	㉓ 성 명	㉔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세)			사진	반명한판
용시 번호	부호	㉕	19	년	월	(3.5cm×4.5cm)	
인사위원회 위원장							

1203-61-2 A(1)
1978.12.14190mm×268mm (인쇄용지 (독판) 120g/m²)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② ③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13 21 30 ……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되 ⑯ ⑰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본적 및 주소 ② ③ ……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동, 반영기)
을 기재할 것.

4. 최종출신학교 ④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
하는 것에 ○ 표 할 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란에 기재할 것.

5. 경력 ⑤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판서
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6. 선택과목 ⑥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 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
시된 선택순서 표지에 따를 것.

7. 비고 ⑩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시험회수, 시험명 및 응시번호나
합격증서 번호를 기재할 것.

전혀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합격자가 차희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전회행정, 외무 및 기출고등고시 제1차 시험합
격자가 차희 당해 고등고시의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8. 가산기표란 ⑦ ⑧ ⑨ …… 4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
하거나 원호대상자의 해당표지(○ 또는 ○표)를 할 것.

* ○ 표지 대상자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이나 천물군경의 유족중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2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표지 대상자

(1) 군인사법 제7조 또는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병인경우 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전투경찰계대자 포함)

(2)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최종시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인자.

9. 응시급류 0108(2)…응시하는 급류를 기재할것.
10. 응시직렬 020929…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당해 직렬중 분야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분야까지 명기할것.
11. 응시번호란…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않것.
12. 생년월일 0822(30)…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일로하여 만연령을 기재할것.
13. 주민등록번호 0523…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것.
14. 성별 0129… 해당하는 성별에 ○표를것.
15. 사진란 0729(30)…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날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볼로 첨부할것.
16. 우편번호…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책지말것.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및번호) 및 사진위의 철인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문질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한판의 것) 1매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날인 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갈색 펜이나 만을 지침하여야 한다.
- 시험당일은 배지번호가 40문자까지 가능 외 화석에 서식하여 책상이나 다른 장소에 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놓거나 그 이후 떠야야 한다.

5. 납관작성은 납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식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 날색의 철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불풀의대여등은 절제금하며 일단 입실한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입의 회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자는 즉시 퇴출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처분한다.

8. 1년 이내로 끊을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시험 요구서

※ 기관 제 인									
접수번호									
(1) 기관명		소 속		② 시험구분		③ 임용예정 직급		직명 분야	
		요 구						급 류	
(4) 성 명		한 글		영 문		만 세		직 등	
		한 자						분야	
(7) 선택과목		가.		필기 시험 면제 사유				급 류	
		나.						금 류	
(10) 자격, 면허 훈련 등				원호대상 여부 (해 당란에 ○)		군제대자 (단기) 군사원호 대상자		19 년 월 시행 제 1차시험 면제 사유	
								19 년 월 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	
						※ 대장번호 작 인		대장 번호	
								확인자성명	

위와 같이 요구함

19 년 월 일

(사진)

시험 요구 기관 의장

(인)

(3.5cm×4.5cm)

시 험 시 행 상 황	시 행 차 수	1	2	3	제 736 호 서
	시 행 년 월 일	19 . . .	19 . . .	19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용 시 번 호				
	전 과				

용 시 번 호	종 사 표	제 인
19 년 시 행 제 회	시 험	(사 진)
일 용 예 정 칙 명 :	(급 류)	위 보고서에 첨부 하는 것과 동일한 진판, 출판본 부식
신 명 :		
시 험 요구 기관명 :		
19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1203-1-A
1978.10.13. 6시190×268 인쇄용지(특급) 120 g/m²

작 성 요 령

1. ※간과 응시료상의 작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1)-(11)란은 시험요구 기관의 인사사무 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요령에 의한다.
 - (1)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 기관의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2)란은 "특별승진" "전직"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란의 "분야"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렬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4)란은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5)란은 (3)란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6)란은 (3)란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7)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 이상 전직, 특채의 경우에는 개란에 1차(나란에 2차 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8)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9)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해당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년월, 시험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0)란과 (11)란은 4, 5급 목병임용시험 응시자로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종 가집수가 가장 많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활동한 것을 접두하고 의사사투담당자의 계정을 날로하자야 한다.

(수입 송지 침 부란)

(欽)

증 시 자 주 의 사 항

1. 원시로를 가지지 아니한 수는 축제할 수 없으며 축제하였을 때에는 시설개시 1시간 전까지 계획부 발행이 된다.
 2. 시설개설자는 원시로 및 종부원, 또는 주민등록증과 출입국심문증으로서 또는 장기자금증명(1년정기 또는 풀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축설장을 배려하기 위해 30분전까지 저장된 시설은 축설하여 시설개시 1시간 전까지 청탁장을 청탁해야 한다.

૧૮

46-36 제 736호 시

보 1979.10.19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1 호

도시 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0 호 (79.10.6)로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9.10.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북구 종암동 3-1342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종암 제 1시장
3. 사업규모 : 3,305.8 (1,000 평)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구북정 둥 1-2호 청한주택(주) 대표이사 김종중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일 : 입가일로부터 - 80.4.29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 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2 호

도시 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5 호 (77.11.29) 및 농고시 제 64 호 (78.2.27) 호로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경인지구 80-1구획 (산 33-5, -24, -25, 산 63-1, 산 34-1, 산 59-1, -4, -5, -6, -7, 도로)
일반지 (산 59-1, 산 64-4, 산 6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월동 국민학교
3. 면적 및 규모 : 17,719坪 (5,360 평)

제736호 시

보 1979.10.19 46-37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영등포구역의도동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9
나.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로부터 1년
6. 위치및계획면적도 : 면적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면적 (도면생략)
-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3 호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법 제 13 조와 전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책
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979.10.16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m ²)	비 고
기 정	서울교육대학	강남구서초동산 114-1 일대	84,622 (25,593평)	
변경	"	"	112,004 (33,881평) 추가	8,283 평

별첨도면 (생략)

- 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전설부 고시 제 349 호 (79.9.21)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지적승인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에 대한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적비판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18

서 울 특 별 시 장

15-38 제736호 시

보 1979.10.19

가.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성	대로	1	6	35m	4730m	제 1 한강교	구영 등포구청	노량진·수원지부
변경	"	"	"	35-45	"	"	"	근 390m 확장
기정	"	2	44	30	1600	봉천동(광19)	신립동(서울대)서울대구내	
변경	"	"	"	"	1080	"	봉천동산 8	520m 폐지
신주	중도	1		20	200	본동 256	본동 180 (대 1-6)	

나. 학교면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존	서울대 학교	관악구 봉천농산 12 일대	3,782,023 m ²	대 2-44 폐지구간
변경	"	"	3,797,623 m ²	편입증 15,600 m ²

다. 수도환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존	수도	관악구 본동 158 일대	111,341.90 m ²	
변경	"	"	110,491 m ²	감 850.90 m ²

면적과 대표자와 같음(도민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5 호

관한 법률 제 8 조에 의하여 단체

사회단체등록취소

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에 고시한다.

1979.10.

다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

서울특별시장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46-39

○ 등록취소 단체 내용

등록 번호	등록 년 월 일	단체 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77 호	77.10.17	세생활주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자부	최내석	서울시마포구 공덕동427-5	79.10.18	사회 단체분부 자진해산

공 고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3 호

동청사 위치변경 공고

1979. 10

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위치변경 내용

동명	변경 대동		변경일자
	이전전	이전후	
양재동	강남구 양재동 42-1	강남구 양재동 321-1	79.10.2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6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말소 공고

전설 추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1979. 9. 27

다음의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은 주택

서울특별시장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말소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2	김상열	남양설비주	중구 수표동 47-6	78.3.22
4	홍정웅	금강주택개발주	중구 을지로 2가 19-2	78.3.24
5	송지전	한국주택개발주	중구 예관동 29-4	78.3.24
17	박재덕	서통개발주	중구 경농2가 92-3	78.4.22
31	김복열	신흥상가주택공사주	영등포구 신길동 255-9	"
35	신선호	울산중공업주	중구 서소문동 85-3	"
50	박대규	주대건	용산구 갈월동 93-30	"

46-40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소재지	교부일자
54	이 광 훈	서진기업(주)	종로구 인사동 235	78. 4.28
58	장 성 채	판악사업(주)	판악구 사당동 135-1	"
59	나 재 선	(주)동화	용산구 갈월동 98-39	"
61	백 유 식	삼산홍업(주)	중구 삼각동 113	"
63	최 상 일	뉴서울주택개발사	강서구 화곡동 13-3	"
64	조 경 재	(주)명화전업사	중구 홍인동 119	"
66	이 응 성	서린개발(주)	종로구 청진동 201-1	"
69	최 낙 섭	한국건설(주)	중구 남대문로 5가 1-1	"
70	김 덕 순	경일기업(주)	중구 장충동 1 가 62-35	"
73	이 서 구	대림홍산(주)	중구 산림동 166	"
77	최 상 교	(주)제보주택	용산구 이태원동 56-13	"
75	김 인 한	금강통영(주)	동대문구 청량리동 781	"
79	신 준 식	반도전영(주)	중구 종림동 420	"
80	하승남	윤성개발(주)	강남구 청담동 338-1	"
82	유영구	명지건설(주)	중구 서초문동 58-17	"
86	한 원 석	제일약품(주)	강남구 서초동 84-1	"
95	임 병 호	성화전업	성동구 자양동 219-2	"
102	성 백 춘	화일산업(주)	중구 장교동 26	78. 4.29
107	김 총 중	중원건설사	성동구 중곡동 106-31	"
112	한창근	농양기계공업(주)	영등포구 양평동 2 가 1-1	"
114	우기성	진우개발(주)	강남구 삼성동 157-59	"
115	김 반 성	연합건축공사	중구 충무로 5 가 20-40	"
120	강창경	(주)동우주택	영등포구 신도림동 909-2	"
123	천신일	동해산업(주)	용산구 한강로 1 가 285-1	"
124	문 유희	대보건설(주)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42	"
128	강충모	(주)광명주택	종로구 신문로 1 가 220	"
131	구자실	농오건설(주)	중구 신당동 247-33	"
137	김지완	전원주택건설(주)	종로구 당주동 167-1	"
144	황석주	(주)황공무사	마포구 창전동 13-27	"
145	박동현	연일주택	중구 회현동 2 가 18-2	"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소재지	교부일자
147	김 유 영	봉진설비(주)	종로구 돈의동 114-1	78.5. 2
148	박 경 복	조선액주(주)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78.4.29
149	백 일 환	한전주택	영등포구 여의도동 1-567	"
150	김 송 대	백송(주)	서대문구 북아현동 48	"
160	박 화 명	삼풍주택(주)	관악구 농작동 307	"
165	김 순 석	금문개발(주)	용산구 이촌동 301-61	"
172	김 태 정	도진건설(주)	중구 다동 111	"
174	김 상 준	덕화공영(주)	용산구 갈월동 71-12	"
180	강 창 화	(주)창신주택	관악구 신림동 43-6	"
181	정 도 영	(주)정명주택	중구 풍무로 1가 24-20	"
183	이 경 두	덕부주택산업(주)	중구 광학동 1가 240-2	"
187	정 치 일	(주)부총개발	용산구 한강로 2 가 2-37	"
194	박 파 주	대일건설(주)	종로구 낙천동 284-6	"
196	이 구 하	하영실업(주)	중구 중랑동 2 가 156	"
198	최 회 춘	우신건설(주)	종로구 은화동 30	"
201	정 상 환	동아공간개발(주)	중구 예관동 70-27	78.5. 4
204	박 응 순	연희개발(주)	관악구 신림동 539-26	"
205	서 정 학	승화종업(주)	서대문구 미근동 320	"
212	방 웅 질	(주)밀신건설	영등포구 달산동 3 가 228-23	"
215	손 영 춘	근화개발(주)	용산구 정화동 3 가 30-10	"
225	이 능 환	(주)동진건설	중구 청동 23-8	"
226	이 한 영	안산주택진흥공사	종로구 종로 3 가 130	"
228	이 수 흥	동양FRP공업(주)	강서구 선성동 619	"
229	한 서 규	유진설업(주)	서대문구 남가좌동 324-19	"
232	박 재 익	동북건설(주)	중구 인현동 2 가 192-30	"
233	배 윤 석	대립개발(주)	관악구 농작동 13-1	"
237	이 경 두	범화건설(주)	중구 입장동 189-1	"
242	이 양 구	농양증합산업(주)	강남구 청담동 산 24	"
245	서 해 창	(주)성창건설	종로구 관수동 6	"
253	신 양 우	농성건설(주)	종로구 관철동 25	"

46-42 제 735 호 시

보 1979.10.19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소 재 지	교부일자
257	김 기 삼	우남건설(주)	중 구 다동 188	78.5.4
263	김 현 우	유일건설(주)	용산구 한남동 76-20	"
264	윤 문 수	동일주택	관악구 봉천동 31	"
265	김 진 일	무림주택(주)	관악구 봉천동 419-2	"
271	원 풍 훈	동영건설사	마포구 합정동 382-10	"
272	이 현 만	전원주택개발(주)	동대문구 납십리 동 267-8	"
276	홍 우 백	남진공업(주)	중 구 초동 18-10	"
278	이 원 상	법진건설(주)	중 구 을지로 3 가 206-11	"
279	송 완 선	진우종업(주)	중 구 명동 2 가 33-1	"
282	윤 태 형	은하산업	강남구 서초동 151-2	"
286	이 서 행	한형건설산업사	도봉구 미아동 160-37	"
288	윤 창 력	성일화학공업(주)	영등포구 가리봉동 250-18	"
289	황 인 수	성일건설(주)	중 구 을지로 4 가 310-68	"
294	최 진 영	한국종합산업(주)	성동구 중동 278-1	"
299	이 두 전	제우개발(주)	중 구 종로동 355	"
299	이 명 원	대영주택공사	서대문구 응암동 103-2	"
300	오 윤 성	영건사	성동구 도선동 363	"
301	김 용 성	금성개발(주)	강남구 신사동 467-10	78.5.10
302	이 한 구	시범건설(주)	강남구 서초동 84-4	"
304	이 재 원	(주)장원종합개발	중 구 을지로 5 가 20-1	"
305	김 회 석	(주)명도건설사	중 구 을지로 2 가 148-4	"
306	이 인 법	삼흥토건(주)	중 구 봉래동 1 가 82	"
309	김 회 수	광산기업(주)	마포구 용강동 122-1	"
310	김 규 환	일한산업(주)	중 구 회현동 1 가 10-2	"
313	최승운	영풍진흥기업(주)	용산구 원효로 2 가 14	"
314	오명태	정림주택개발(주)	종로구 연건동 187-1	"
316	허완구	부천주택	중 구 남대문 4 가 17-2	"
318	현종락	(주)천양건축	도봉구 수유동 191-67	"
319	김도연	대한종합개발(주)	중 구 서소문 58-7	"
324	신춘호	농심개발(주)	영등포구 신길동 4564	"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326	김 총 인	(주)부일주택	용산구 한강로 2 가 140	78.5.10
327	김 철	전엔자리어링	중구 조동 155-3	"
328	박정호	우방건설(주)	용산구 농부이촌동 300-322	"
329	양 오 현	(주)남정주택	강남구 삼포산 1-6	"
330	최명길	청조주택개발공사	중구 다동 71	"
333	김만중	삼도종합개발(주)	영등포구 여의도 1-700	"
334	한홍경	한경주택	성북구 삼선 5 가 275-1	"
340	최삼규	이화공영(주)	중구 필동 2 가 17-2	"
342	경주현	중앙개발(주)	중구 을지로 1 가 50	"
345	김동기	중앙상선(주)	종로구 풍학동 14	"
348	김형주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종로구 선문로 1 가 171-6	"
351	김정국	삼안공영(주)	종로구 묘동 121	"
352	이현우	삼원진흥건설(주)	종로구 관철동 14-10	"
353	김연수	홍익공영(주)	강남구 삼성동 157-50	"
358	유기학	국제공영(주)	중구 을지로 1 가 37	"
360	신동범	한양토건(주)	종로구 창신동 424-2	"
361	노영식	정익산업(주)	강남구 학동 159-1	"
362	이철영		성동구 화양동 24-7	"
365	김배격		관악구 대방동 407-31	"
366	이원행	성일개발	영등포구 계동 353-1	"
366	권혁열	(주)한림화학	영등포구 구로동 685-151	"
371	조인상	미영통상(주)	영등포구 둑산동 125-1	"
372	박경근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강서구 등촌동 산 61-1	"
372	남복동	우리건설(주)	중구 양동 314	"
380	박기석	(주)동신건설	강남구 정남 산 67-63	"
383	홍경석	우천산업(주)	중구 을지로 4 가 316	78.5.16
387	황의영	동명주택	관악구 신림 704-61	"
391	장정환	유진산업(주)	강서구 목동 81	78.5.24
392	민병옥	남원설업(주)	영등포구 서초동 510-5	"
397	박호근	(주)거북이개발	강남구 도곡동 129-6	"

-44 제 736 호 시			보	1979. 10. 19.
번호	성 명	상 호	소 재	지 교부일자
403	이 원호	삼성개발	동대문구 신설동 102-4	78.5.24
405	김 전화	태화전업	중구 수화동 16	78.5.30
406	김 장일	삼풍김일(주)	서대문구 미군동 194	"
409	허 성우	보원주택	중구 수하동 5	"
414	최 명준	은화산업(주)	중구 장교동 42	"
415	김 창원		종로구 부암동 177-6	"
422	장갑희 외 5	한일건설(주)	용산구 동자동 14 의 51	"
423	조승덕	한금산업(주)	중구 대현동 2 가 192-30	"
429	김 영미	석재화조선업	종로구 종로 2 가 5	"
		계	136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7 호

차지 짜회 일부 면경인 가및화자

예정지 변경 및 청공고

영등포구 구의정리 사설지구내 일부
지역에 대해 차지 계획을 변경교사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1 호 (79. 6. 2)

1. 부수 향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권리 사용법 제 55 조의

5에 대하여 차지 계획 일부 변경
사하고 유통 제 56 조의 규정에 의
1. 차지 예정지를 일부 변경지정 하
기 이를 공고한다.

과세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국장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옹사실에
부수 향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0. 19.

서울특별시장

(화지 예정지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등포자 구회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반포동 227, 226
번지
- 다. 변경면적 : 1,392.80평

(②)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8 호

공인점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점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하다

1979. 10.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가) 서울특별시립 강동구
보건소장의인
- 나) 서울특별시립 강동구
보건소계인

제 736 호 시		보 1979. 10. 19. 45-45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 전소 장수파의인	마)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전소 분당경리파의인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 전소 분양경리파의인	2. 윤시개시일 1979. 10. 20	
	3. 공인의인영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강동구보전소장수파의인	서울특별시립강동구보전소장수파의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장수파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장수파의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분양경리파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분양경리파의인

⑤ 서울특별시 공고제 349 호

1979. 10.

공인신조 사용승인공고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승인하였다.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고한다.

1. 공인명 : 와전파 분임장을
증명한인
2. 사용개시일 : 1979. 10. 20

46-46 제 736 호 사

보 1979.10.19

3. 공인의 의무

과제인에게 보입니다.

c]



9

공인명: 의 전 과 복일 물 품 출납 원인

1979.10.19.

서 울 특 별 시 장

(화재예정지역내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위치: 강남구 테헤란로 618 번지 외 22 철

강남구서초동 1086의 1호

다. 면적 : 7,587.40 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3 호

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350 호

은수주택단지분양(화지)처분공고

학자적 획일부 변경 인가 및

황사 예警지 변경지 정공고

1.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화지 계획을 변경
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0 호
(79.8.16)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기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화지 계획
을 일부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화지 예정지를 일
부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관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54(76.10.2)
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실시계획인가된 은수주택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7조2의 규
정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사유지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
조 규정에 의하여 화지확정처분하
고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파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1979.10.20.

서울특별시장

2199